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653-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noinboho1389.or.kr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Contents

PART 0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1
PART 0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5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21~2025년)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1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현황	17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18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19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20
연도별 재학대 건수	21
연도별 신고자 유형	22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5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2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27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29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30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31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32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33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6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8
연도별 학대행위자 정신장애	40
연도별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41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PART 0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발간목적

- 본 보고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최근 5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방향 및 노인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설치현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17개 광역 시·도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하였음

자료수집 과정

- 본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자료분석

-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내용

-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연도별 실적을 담고 있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신고접수 건수 • 학대사례 판정 건수 • 일반사례 건수 • 재학대 건수 • 신고자 유형 • 학대발생장소 • 학대 사례판정 현황 • 학대유형 건수 • 전체상담 횟수 • 일반상담 횟수 • 학대상담 횟수 • 사후관리 횟수 •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학대행위자 연령대 • 학대행위자 정신장애 및 중독유형



PART 0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신고 접수

Q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2025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Q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¹⁾,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그 밖의 친족 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1) 경찰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른 노인학대 통보와 신고로 인한 수치가 포함됨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 사례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 사례판정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 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인 사례는 학대사례에서 제외됨

🔍 일반사례

-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 학대 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는 일반사례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추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Q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불이행·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Q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Q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Q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편정(생활시설, 이용시설)과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학대사례는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으로 판정된 사례임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의 상담은 일반상담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기타 용어정리

🔍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보호자

-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노인 독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이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 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21~2025년)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21~202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중양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표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단위: 개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8	38	38	39	40

* 중양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현황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2025년 전국 20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운영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25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26,578건으로 2024년 대비 약 16.8% 증가(22,746건 → 26,578건) 하였음
 -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 비율에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2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사례	19,391	19,552	21,936	22,746	26,578
증감률	14.2	0.8	12.2	3.7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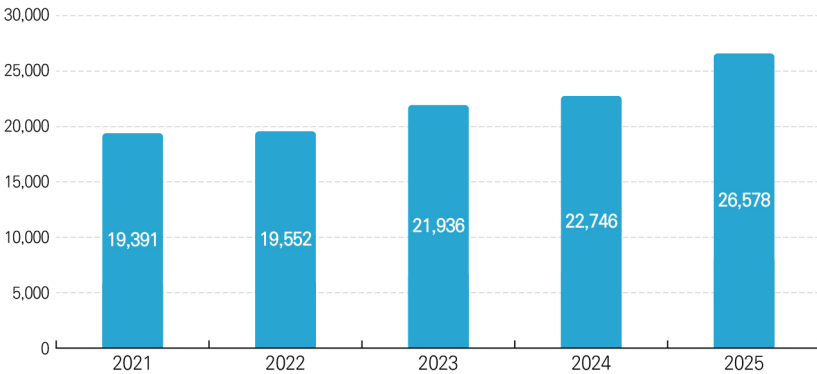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 학대사례²⁾의 경우 전체 사례의 30.0%이며 2024년 대비 약 11.2% 증가 (7,167건 → 7,973건) 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대사례	6,774	6,807	7,025	7,167	7,973
	34.9	34.8	32.0	31.5	30.0
증감률	8.2	0.5	3.2	2.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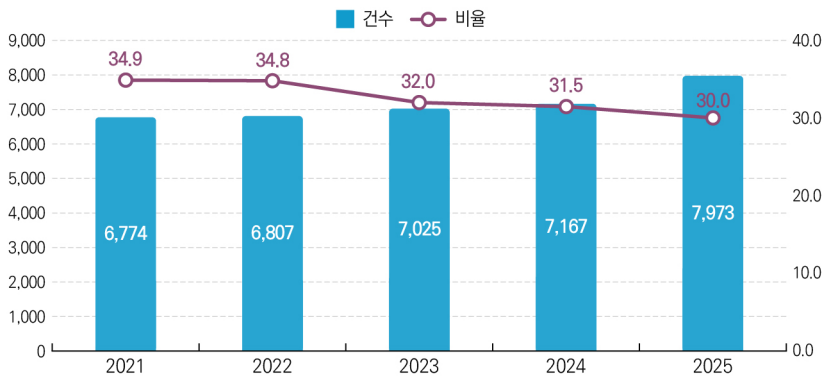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학대발생장소	가정 / 공공장소 / 기타	노인의료 / 노인주거 / 노인이가 / 재가 복지시설, 병원
학대사례(사례판정 기준)	응급, 비응급, 잠재	응급, 비응급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일반사례³⁾는 전체사례의 70.0%이며 2024년 대비 약 19.4% 증가(15,579건 → 18,605건) 하였음

표 4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사례	12,617	12,745	14,911	15,579	18,605
	65.1	65.2	68.0	68.5	70.0
증감률	17.8	1.0	17.0	4.5	19.4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로 판정된 "잠재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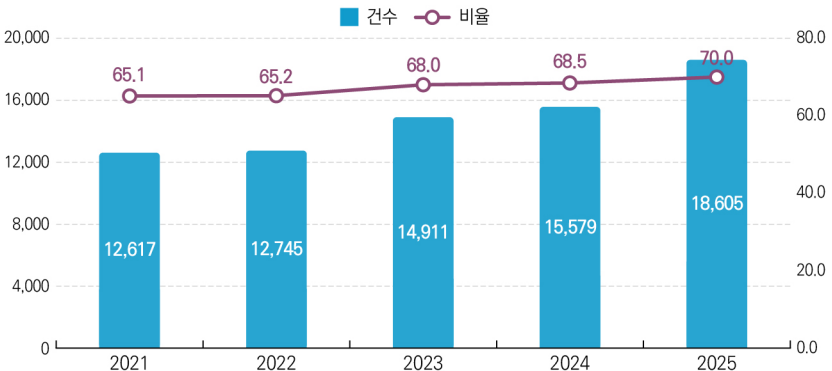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3) 일반사례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는 일반사례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연도별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약 0.2%p 감소(11.3%(812건) → 11.1%(884건)) 하였음

표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대사례 건수	6,774	6,807	7,025	7,167	7,973	
재학대	건수	739	817	759	812	884
	비율	10.9	12.0	10.8	11.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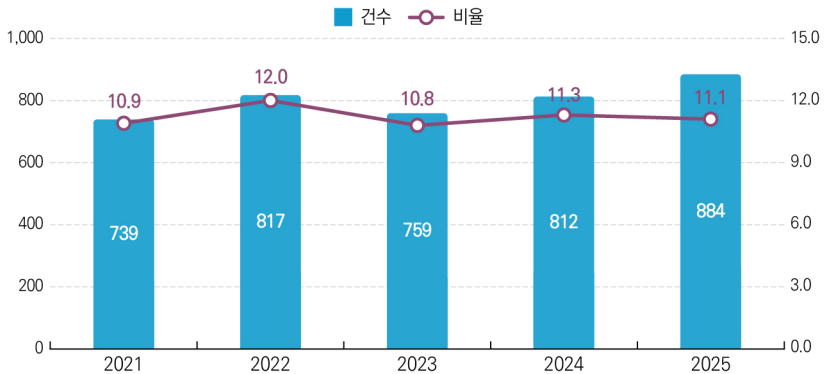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025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2024년 대비 약 3.3% 증가 (1,004건 → 1,037건) 하였음
- 2025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87.0%이고, “관련 기관” 6,118건 (76.7%), “친족” 426건(5.3%), “학대피해노인 본인” 226건(2.8%), “타인” 158건(2.0%)으로 관련 기관과 학대행위자 본인은 2024년 대비 비율 증가함

표 6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3	18	48	15	21
		0.3	0.3	0.7	0.2	0.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⁴⁾	-	-	-	-	2
		-	-	-	-	0.0
	방문요양과 돌보미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1	20	18	11	12
		0.2	0.3	0.3	0.2	0.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46	298	282	283	312
		3.6	4.4	4.0	3.9	3.9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6	9	2	2
		0.1	0.1	0.1	0.0	0.0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70	59	58	40	55
		1.0	0.9	0.8	0.6	0.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26	211	167	179	205
		4.8	3.1	2.4	2.5	2.6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0	9	7	-	-
		0.1	0.1	0.1	-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45	42	48	41	32	
	0.7	0.6	0.7	0.6	0.4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1	1	2	2	-	
	0.0	0.0	0.0	0.0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	1	-	1	2	
	0.0	0.0	-	0.0	0.0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7	6	4	2	3
		0.1	0.1	0.1	0.0	0.0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25	29	13	8	17
		0.4	0.4	0.2	0.1	0.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8	9	5	9	9
		0.1	0.1	0.1	0.1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83	155	64	60	44
		1.2	2.3	0.9	0.8	0.6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⁴⁾	-	261	313	348	319	
	-	3.8	4.5	4.9	4.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	6	3	2	
	-	-	0.1	0.0	0.0	
소계	860	1,125	1,044	1,004	1,037	
	12.7	16.5	14.9	14.0	13.0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361	334	344	289	226
		5.3	4.9	4.9	4.0	2.8
	학대행위자 본인	8	4	7	2	8
		0.1	0.1	0.1	0.0	0.1
	친족	549	507	505	448	426
		8.1	7.4	7.2	6.3	5.3
	타인	197	118	190	150	158
		2.9	1.7	2.7	2.1	2.0
	관련기관 ⁶⁾	4,799	4,719	4,935	5,274	6,118
		70.8	69.3	70.2	73.6	76.7
	소계	5,914	5,682	5,981	6,163	6,936
		87.3	83.5	85.1	86.0	87.0
계	6,774	6,807	7,025	7,167	7,973	
	100	100	100	100	100	

4)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유형 분류 적용(25.10.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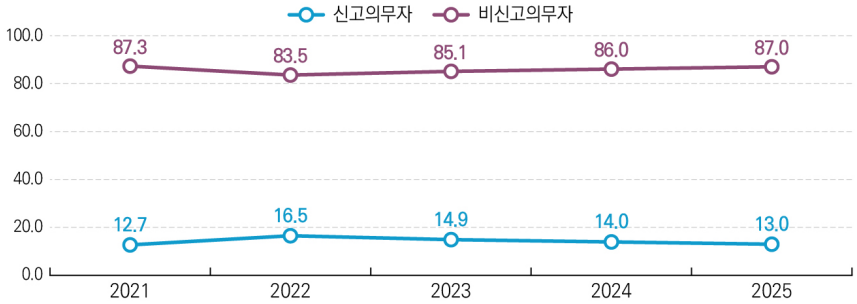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 5) 「노인복지법」 개정(21.12.21.)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수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포함하여 집계함(2024년부터 적용)
- 6)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이 포함됨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25년 7,076건(88.7%)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24년 대비 3.2% 증가(595건 → 614건) 하였으며,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24년 대비 67.3% 증가(52건 → 87건) 하였음

표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정 내	5,962	5,867	6,079	6,323	7,076
	88.0	86.2	86.5	88.2	88.7
생활시설	536	662	571	595	614
	7.9	9.7	8.1	8.3	7.7
이용시설	87	52	108	52	87
	1.3	0.8	1.5	0.7	1.1
병원	62	86	115	66	49
	0.9	1.3	1.6	0.9	0.6
공공장소	54	51	64	61	70
	0.8	0.7	0.9	0.9	0.9
기타	73	89	88	70	77
	1.1	1.3	1.3	1.0	1.0
계	6,774	6,807	7,025	7,167	7,973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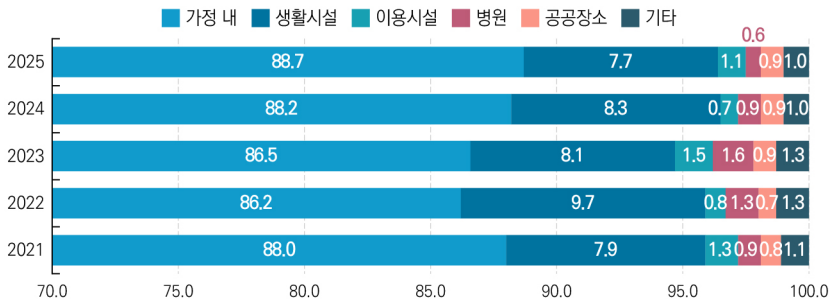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 1.4%(111건), 비응급 사례 68.2%(5,435건), 잠재 사례 30.4%(2,427건)**로 2024년 대비 잠재 사례는 증가한 반면, 응급 및 비응급 사례는 다소 감소함

표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응급 ⁷⁾	142	170	167	114	111
	2.1	2.5	2.4	1.6	1.4
비응급 ⁸⁾	4,445	4,157	4,561	4,905	5,435
	65.6	61.1	64.9	68.4	68.2
잠재 ⁹⁾	2,187	2,480	2,297*	2,148*	2,427*
	32.3	36.4	32.7	30.0	30.4
계	6,774	6,807	7,025	7,167	7,973
	100	100	100	100	100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인 사례는 학대사례에서 제외됨(잠재사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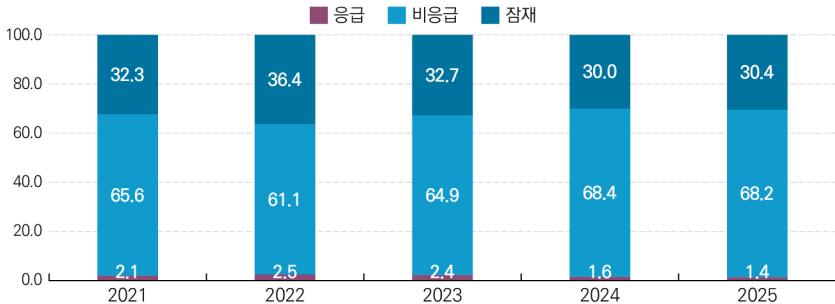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응급: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처럼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 비응급: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사례
- 잠재: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을 둘러싼 관계, 환경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학대로까지 이어질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의 '잠재' 판정 수치는 제외)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발생 가능하며, '25년도는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건수('25) : 신체적 학대 5,215건(44.2%), 정서적 학대 5,135건(43.5%), 방임 630건(5.3%), 경제적 학대 326건(2.8%), 성적학대 313건(2.7%), 자기방임 149건(1.3%), 유기 31건(0.3%)의 순
- 유기를 제외한 전체 학대유형이 2024년 대비 증가함
 - 신체적 학대: 8.7% 증가 (4,797건 → 5,215건)
 - 정서적 학대: 7.3% 증가 (4,784건 → 5,135건)
 - 방임: 3.3% 증가 (610건 → 630건)

표 9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체적 학대	4,390	4,431	4,541	4,797	5,215
	41.3	42.0	42.7	43.9	44.2
정서적 학대	4,627	4,561	4,531	4,784	5,135
	43.6	43.3	42.6	43.8	43.5
성적 학대	260	259	265	272	313
	2.4	2.5	2.5	2.5	2.7
경제적 학대	406	397	352	298	326
	3.8	3.8	3.3	2.7	2.8
방임	691	689	758	610	630
	6.5	6.5	7.1	5.6	5.3
자기방임	204	169	165	131	149
	1.9	1.6	1.6	1.2	1.3
유기	46	36	26	40	31
	0.4	0.3	0.2	0.4	0.3
계	10,624	10,542	10,638	10,932	11,799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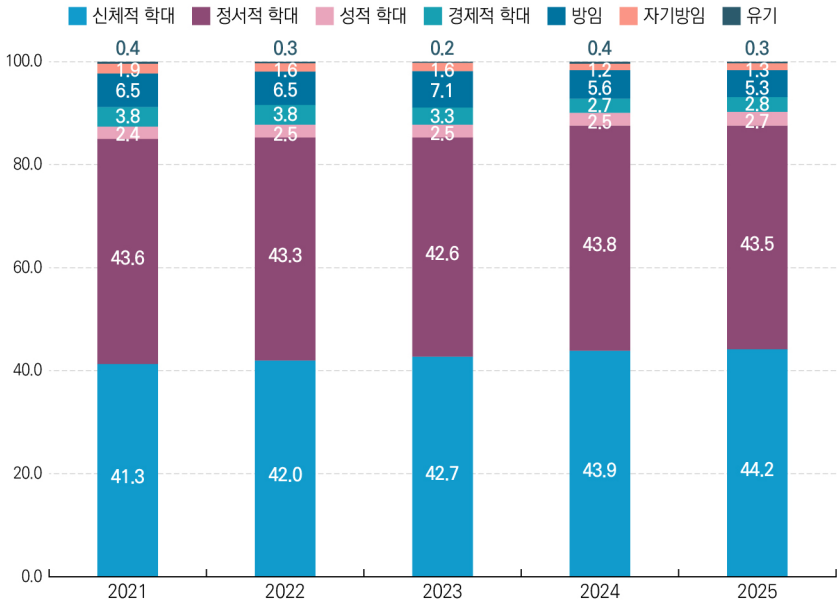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전체상담 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임
 - 전체상담 횟수는 2024년 대비 약 8.9% 증가(237,519회 → 258,761회) 하였으며, 전체 신고접수 건수(26,578건) 한 사례당 9.7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0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상담	200,513	203,884	225,589	237,519	258,761
증감률	9.7	1.7	10.6	5.3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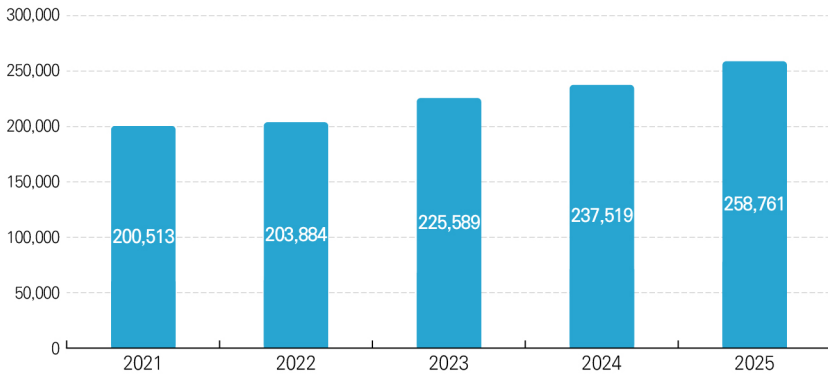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추이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일반상담의 경우 2024년 대비 약 25.3% 증가(58,739회 → 73,594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28.4%의 비율을 보임
 - 전체 일반사례 건수(18,605건) 한 사례당 약 4.0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1 연도별 일반상담¹⁰⁾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상담	41,067	44,482	56,166	58,739	73,594
	20.5	21.8	24.9	24.7	28.4
증감률	28.3	8.3	26.3	4.6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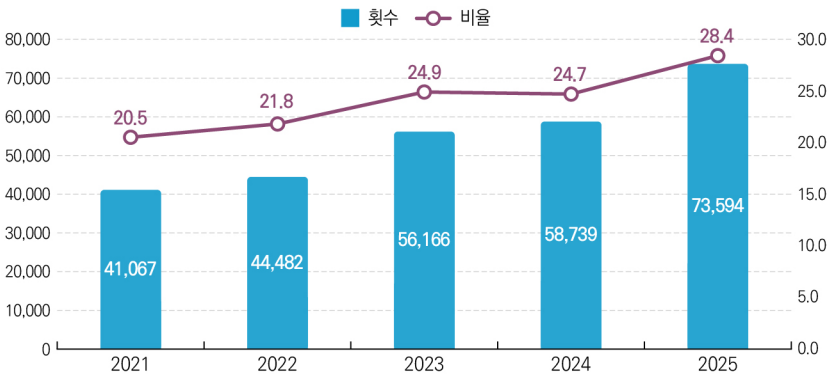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10) 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및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건수는 '일반' 상담에 포함함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학대상담의 경우 2024년 대비 3.6% 증가(178,780회 → 185,167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71.6%를 차지함
 - 전체 학대사례 건수(7,973건) 한 사례당 약 23.2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2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대상담	159,446	159,402	169,423	178,780	185,167
	79.5	78.2	75.1	75.3	71.6
증감률	5.7	0.0	6.3	5.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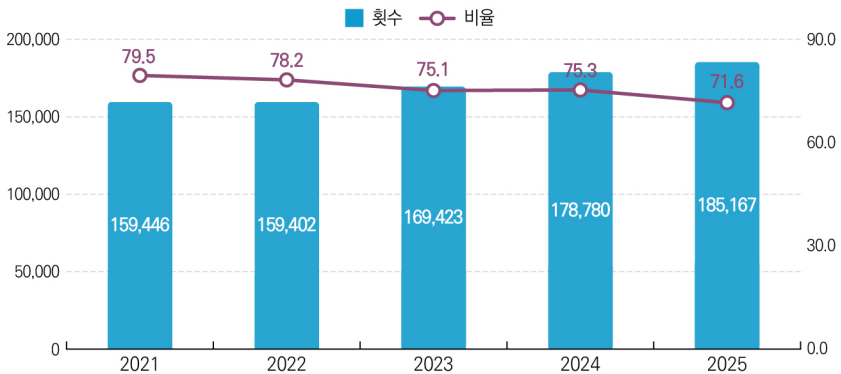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24년 대비 약 8.9% 증가(40,340회 → 43,947회) 하였음

표 13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후관리 ¹¹⁾	25,170	24,330	33,207	40,340	43,947
증감률	4.6	-3.3	36.5	21.5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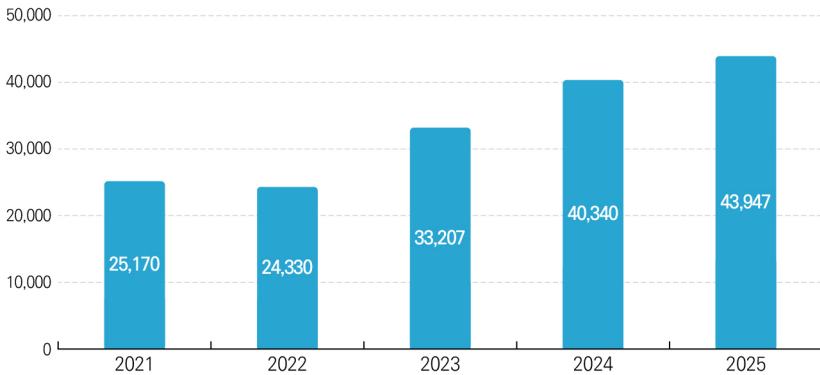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추이

11) 사후관리란,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의미함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2024년 대비 노인독거가구¹²⁾는 19.3% 증가(1,057건 → 1,261건), 손자녀 동거가구는 18.4% 증가 (206건 → 244건) 증가, 노인부부가구는 17.0% 증가(2,886건 → 3,376건) 하였음

표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노인독거	1,195	1,127	1,118	1,057	1,261
	17.6	16.6	15.9	14.7	15.8
노인부부	2,332	2,467	2,741	2,886	3,376
	34.4	36.2	39.0	40.3	42.3
자녀동거	2,111	2,034	1,982	2,057	2,207
	31.2	29.9	28.2	28.7	27.7
손자녀 동거	217	205	203	206	244
	3.2	3.0	2.9	2.9	3.1
자녀·손자녀 동거	235	228	191	196	186
	3.5	3.3	2.7	2.7	2.3
기타	684	746	790	765	699
	10.1	11.0	11.2	10.7	8.8
계	6,774	6,807	7,025	7,167	7,973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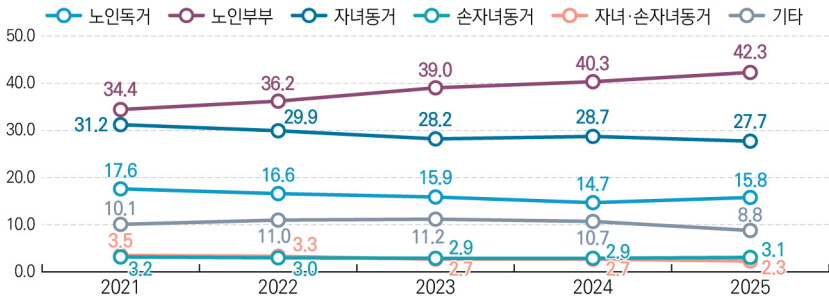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 '노인독거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배우자”(3,563건, 39.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학대행위자 유형(25년): 배우자(39.4%), 아들(23.5%), 기관(18.9%), 딸(7.7%) 등
- “기관”에 의한 학대는 2024년 대비 약 28.4% 증가(1,334건 → 1,713건)
- 배우자 학대의 증가 배경으로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 연도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노인부부가구 ('08) 47.1% → ('20) 58.4% → ('23) 55.2%
 - 자녀동거 가구 ('08) 27.6% → ('20) 20.1% → ('23) 10.3%
 -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함

표 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인	204	169	165	131	149
	2.4	2.3	2.1	1.7	1.6
배우자	2,455	2,615	2,830	3,053	3,563
	29.1	34.9	35.8	38.7	39.4
아들	2,287	2,092	2,080	2,082	2,123
	27.2	27.9	26.3	26.4	23.5
며느리	119	106	88	81	83
	1.4	1.4	1.1	1.0	0.9
딸	627	620	607	575	700
	7.4	8.3	7.7	7.3	7.7
사위	42	38	45	42	40
	0.5	0.5	0.6	0.5	0.4
손자녀	172	179	168	183	222
	2.0	2.4	2.1	2.3	2.5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친척	90	49	76	65	63
	1.1	0.7	1.0	0.8	0.7
타인	257	264	277	335	390
	3.1	3.5	3.5	4.3	4.3
기관	2,170	1,362	1,564	1,334	1,713
	25.8	18.2	19.8	16.9	18.9
계	8,423	7,494	7,900	7,881	9,046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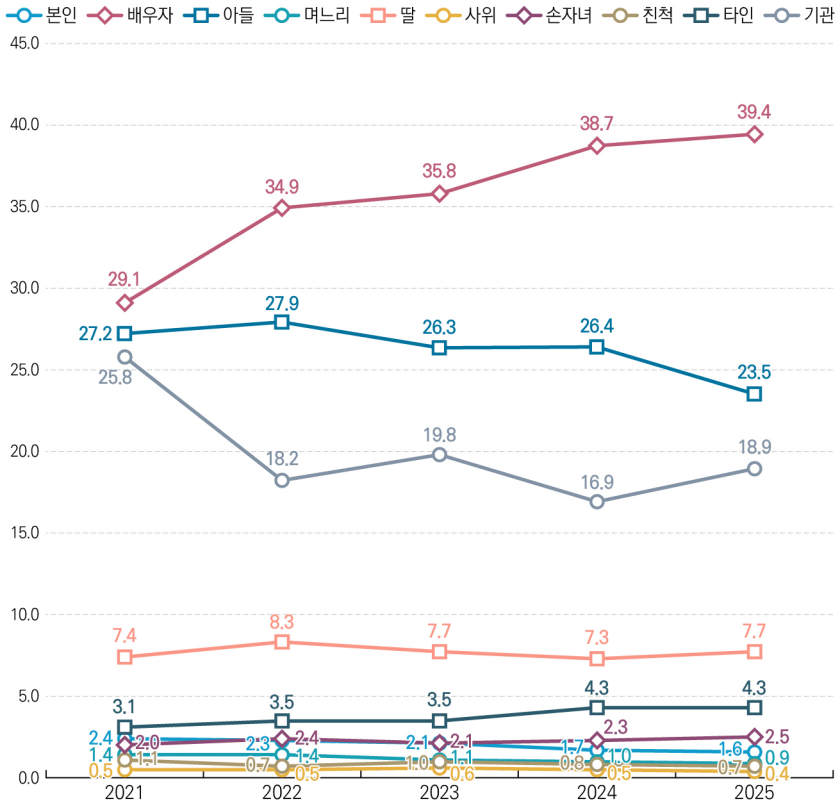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0%대의 수치('25년 42.3%)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80대 26.4%, 60대 26.0%, 90대 5.1%, 100세 이상 0.1%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연령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 학대피해노인 7,973명 중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51.4% (4,100명)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6.7% 증가('21년 3,841명 → '25년 4,100명)하는 등 고령 학대피해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인실태조사('23)*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년 43.7%에서 '23년 42.0%로 1.7%p 감소하였으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한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함
-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 ('21) 1,092명 → ('25) 1,220명, 11.7% 증가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5~69세	1,428	1,467	1,655	1,812	2,074
	21.1	21.6	23.6	25.3	26.0
70~74세	1,505	1,439	1,576	1,559	1,799
	22.2	21.1	22.4	21.8	22.6
75~79세	1,394	1,371	1,354	1,425	1,577
	20.6	20.1	19.3	19.9	19.8
80~84세	1,269	1,272	1,244	1,213	1,287
	18.7	18.7	17.7	16.9	16.1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5~89세	769	804	786	759	818
	11.4	11.8	11.2	10.6	10.3
90~94세	308	337	327	321	320
	4.5	5.0	4.7	4.5	4.0
95~99세	92	103	76	69	88
	1.4	1.5	1.1	1.0	1.1
100세 이상	9	14	7	9	10
	0.1	0.2	0.1	0.1	0.1
계	6,774	6,807	7,025	7,167	7,973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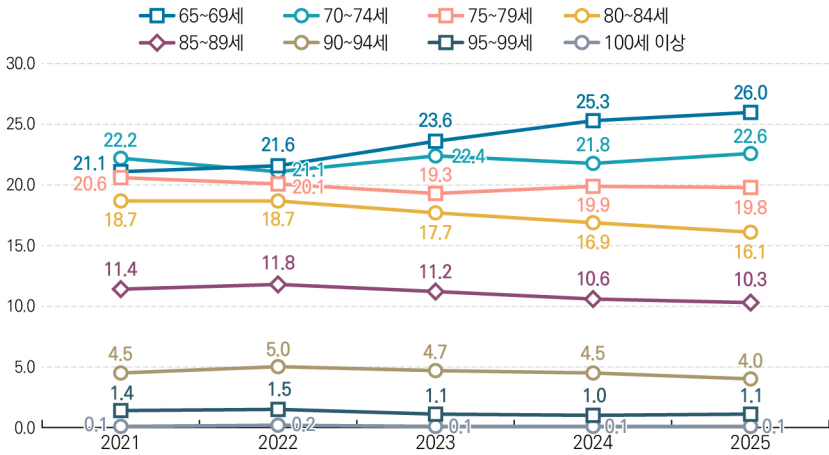


그림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2025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3,166명(35.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60대 2,185명(24.2%), 50대 1,761명(19.5%), 40대 1,165명(12.9%), 30대 471명(5.2%)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학대행위자 대비 10대 55.1%(78명 → 121명), 60대 25.4%(1,743명 → 2,185명), 70대 이상 15.8%(2,734명 → 3,166명), 30대 14.6%(411명 → 471명), 50대 13.0%(1,559명 → 1,761명), 20대 11.4%(158명 → 176명) 증가하였으며, 40대는 2.8%(1,198명 → 1,165명) 감소함

표 17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세 미만	-	-	3	-	1
	-	-	0.0	-	0.0
10~19세	67	65	87	78	121
	0.8	0.9	1.1	1.0	1.3
20~29세	138	138	93	158	176
	1.6	1.8	1.2	2.0	1.9
30~39세	405	394	386	411	471
	4.8	5.3	4.9	5.2	5.2
40~49세	1,393	1,269	1,209	1,198	1,165
	16.5	16.9	15.3	15.2	12.9
50~59세	2,486	1,763	2,034	1,559	1,761
	29.5	23.5	25.7	19.8	19.5
60~69세	1,557	1,407	1,523	1,743	2,185
	18.5	18.8	19.3	22.1	24.2
70세 이상	2,377	2,458	2,565	2,734	3,166
	28.2	32.8	32.5	34.7	35.0
계	8,423	7,494	7,900	7,881	9,046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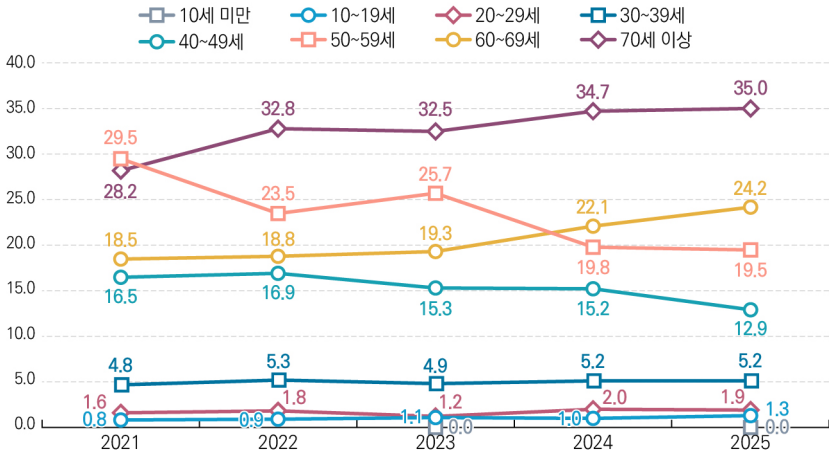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 정신장애

- 2025년 학대행위자의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를 보면 조현병이 357건(28.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울장애 300건(24.2%), 지적장애 134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과 비교하여 보면 자폐성장애 66.7%(9건 → 15건), 정동장애 46.3%(67건 → 98건), 반사회적 인격장애 20.0%(35건 → 42건), 조현병 15.5%(309건 → 357건), 지적장애 12.6%(119건 → 134건), 우울장애 7.9%(278건 → 300건)로 전체 장애 유형이 증가함
- '21년의 학대행위자 정신장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체 정신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연도별 학대행위자 정신장애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장애유형 ¹³⁾	1,049	1,090	1,066	1,123	1,239
	100	100	100	100	100
조현병	342	319	270	309	357
	32.6	29.3	25.3	27.5	28.8
우울장애	227	263	293	278	300
	21.6	24.1	27.5	24.8	24.2
지적장애	92	107	126	119	134
	8.8	9.8	11.8	10.6	10.8
정동장애	49	57	71	67	98
	4.7	5.2	6.7	6.0	7.9
반사회적 인격장애	38	27	24	35	42
	3.6	2.5	2.3	3.1	3.4
자폐성장애	6	4	8	9	15
	0.6	0.4	0.8	0.8	1.2

13)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학대행위자 통계 수치(9,046건)와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통계 수치(1,239건)에는 차이가 있음

연도별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 2025년 학대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중독상태에 있는 경우는 11.9%(1,075건)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중독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998건 (1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박중독 47건(0.5%), 약물 사용장애 30건(0.3%) 순으로 나타남
- 2024년과 비교하면 학대행위자의 전체 중독유형은 13.0%(951건 → 1,07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약물 사용장애 87.5% (16건 → 30건), 도박중독 27.0% (37건 → 47건), 알코올 사용장애 11.1%(898건 → 9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9 연도별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학대행위자	8,423	7,494	7,900	7,881	9,046
	100	100	100	100	100
중독유형 소계 ¹⁴⁾	1,224	1,018	1,017	951	1,075
	14.5	13.6	12.9	12.1	11.9
도박중독	30	35	31	37	47
	0.4	0.5	0.4	0.5	0.5
알코올 사용장애	1,158	954	967	898	998
	13.7	12.7	12.2	11.4	11.0
약물 사용장애	36	29	19	16	30
	0.4	0.4	0.2	0.2	0.3

14) 중독유형은 27가지 이상의 유형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학대행위자 통계 수치(9,046건)와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통계 수치(1,075건)에는 차이가 있음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발행월 : 2026년 6월

발행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